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2676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김도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최재호

변론 종결2020. 11. 24.

판결 선고2021. 4.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4. 14. 접수 제96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788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C은 원고에게 28,961,030원 및 그중 28,400,804원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 11. 15.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원리금은 49,463,46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가 2014. 10. 16.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E, C, 피고가 있다(상속지분 각 1/3 지분).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3 지분, E이 1/3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4. 14. 접수 제9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기관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지분등기 중 각 1/3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에 대하여 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태호

별지